

協會 新規加入業體 紹介

韓 國電機工業協會 設立 당 시 125個 會員社(團體) 였으나 12個社가 新規로 加入함 으로써 '90. 6. 30 現在 會員業體(團體) 數는 137個社로 늘어났다.

中古 電氣機器類 輸入推薦 業務 委任

상 공부 輸出入 別途公告 改定 告示 제90~17호 ('90. 4. 9) 에 의거, 中古 電氣機器類수입 추천 업무가 韓國電機工業協會 에 위임되었다. 앞으로 本會는 電氣機器類 및 産業設備 중 國산공급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HS 85계 85류 電氣機器類와 機械類, 部品, 素材 國산개발대상품목 또는 公업기반기술개발대상품목 중 개발을 위한 見本品를 추천하게 되

는데 다만, 신청 機械類가 2개 이상의 團體에 해당되는 경우는 韓國機械工業振興會長이 각 관련 團體의 任職員 1人 이상을 委員으로 구성된 輸入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수입을 추천한다. 해당 中古 電氣機器類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規定에 定한 諸般書類를 備하여 本會 事務局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고전기기기 수입추천요령
78Page 참조.

Hong Kong ELENEX'90 參觀

본 회는 국제전시회를 통한 우리나라 중전기 업계의 수출 경쟁력배양 및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협회 주최로 제1회 국제전기

▼新規加入會員業體 名單

業體(團體)名	代表者	電話番號	所 在 地
경 동 전 업 사	조 형 윤	266-9663~4	서울시 중구 산림동 249
상용전장엔지니어링	김 무 용	(0525)31-1771~3	경남 김해군 주촌면 내사리 1309
서흥화학공업(주)	남 치 호	(051)204-3711~3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92
(주) 성 진 전기	이 중 한	(0345)494-2495~7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393
신 일 정 밀 (주)	정 경 춘	(0345)85-2170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23
(주) 태 진 전 기	이 호 철	277-5068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 벽산빌딩 4층
한국전력전자연구조합	박 준 호	463-6141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17-10
신우전기공업(주)	김 승 호	465-1423, 465-3124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152-8 금석빌딩 212
(주) 조 양	조 한 남	(0345)494-1597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057-2
(주) 건 화 상 사	정 우 경	(032)674-7232~3 662-0101~2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212-4
건화전기공업(주)	정 우 경	(0418)44-9365~8	충남 아산군 인주면 관암리 429-2
경 보 전 기 (주)	김 용 현	465-1133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99-219

전시회 참관단을 組織〔團長：新宇電氣(株) 金昇鎬 社長〕, 홍콩 국제 전기전자 전시회(Hong Kong ELENE X '90)를 다녀

왔다.

전시회 참가인원은 본협회 회장 李喜鍾 외 23명으로 구성, 5월22일 출국하여 5월25일 귀국하

였다. Hong Kong ELENE X는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로서 84년 첫회를 시작한 이래 이번을 포함하여 4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金星産電 等 4個業體(금성산전, 금성계전, 금성기전, 금성하니웰)와 세계중전기기의 유명업체인 ABB, GEC, WEICO 등 25개국 240개 업체가 참가 출품했다.

전시회 참관기간 중 협회회장 주최 만찬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회원업체와의 우리업체 현안을 토론했던 등 협회와 회원사간의 상호신뢰, 나아가서는 유기적인 관계구축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 홍콩 ELENE X '90참관단 명단

업 체 명	직책	이 름
한국전기공업협회	회 장	이 회 중
"	부회장	배 수 역
장 안 공 업(주)	사 장	장 시 용
삼 분 전 기	사 장	김 병 식
(주) 조 양	사 장	조 한 남
(주)선 일 전 기	사 장	박 창 근
(주)태 진 전 기	사 장	이 호 철
건 화 상 사	사 장	정 우 경
신우전기기업(주)	사 장	김 승 호
"	부사장	조 춘 지
영화산업전기제작소	부사장	공 민 영
계 양 전 기	상 무	김 주 철
아 남 산 업(주)	전 무	정 태 흥
"	차 장	양 준 빈
"	대 리	주 일 정
"	주 임	김 동 일
오 성 기 전	상 무	황 보 삼
장 안 공 업(주)	차 장	권 병 성
"	과 장	김 태 혁
"	대 리	장 세 윤
태 진 전 기	이 사	이 영 권
대 한 전 선	과 장	박 진 수
한국전기공업협회	부 장	장 동 범
"	대 리	박 병 일

전기공업발전 민간 협의회 사무국 이관

전 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사무국이 그동안 한국 전기공업협동조합내에 설치되어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동협의회의 소관업종이 전선, 용접등 타조합 소관 품목도 있으므로 이들 품목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전기공업 관련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기공업협회에서 동업무를 관장토록하게 하기 위하여 '90년 7월 회칙을 개정하여 동협의회의 사무국을 한국전기공업협회내에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 회칙 79 page 참조

중고전기기기 수입추천요령

상공부 수출입 별도공고 개정고시 제90-17호('90. 4. 9)에 따른 중고전기기기 수입품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년 4월 10일
한국전기공업협회

— 다 음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 별도공고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업협회(이하"본회"라 한다)에 위임된 중고 전기기기류 수입 추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대상) 수출입 별도공고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전기기기류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한다.

산업설비 (본선인도가격으로 미화 30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일관생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 또는 추천으로 한다.

제3조 (수입제한) 수입코자하는 물품의 신품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공고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상 심한 입초국(원산지, 선적지 기준)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제4조 (추천신청) 제2조 규정에 의한 중고 전기기기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추천기준) 추천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산 공급이 불가능한것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신청 기계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각 관련 단체의 임·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 수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처리기간)

- (1) 추천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
- (2)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외국기관 및 해외공관과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 나) 서류보관에 소요되는 기간
 -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 라) 공휴일

제8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 (1)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 (2)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변경신청) 본회가 추천한 수입추천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본회가 추천한 수입추천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추천서 반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적보고) 수입추천 실적은 매월,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 이내에 소정양식(별지 1-1호, 1-2호 서식)에 의거 상공부에 보고한다.

제12조 (기타)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제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이 요령은 199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비서류

1. 중고전기기기류 수입추천 신청
 - 가) 수입승인신청서 6부 (임대차 수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서식)
 - 나)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무상기증의 경우 당해사실 입증서류)
 - 다) 신청사유서, 용도설명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라) 수입대행계약서 1부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리스계약서 1부 (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카탈로그 또는 도면 1부
 -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재신청
 - (1) 유효기간 연장
 - 가) 수입승인 신청서 6부
 - 나)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1부
 - 다) 사유서 1부
 - 라) 기 발급받은 추천서류
 - (2) 변경신청
 - 가) 수입승인 신청서 6부
 - 나) 사유서 1부
 - 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라) 기 발급받은 추천서류
3. 이의신청
 - 가) 수입승인 신청서 6부
 - 나) 이의신청서 1부
 - 다) 사유서 1부

별표 2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기류 및 산업설비

1. HS 제85류 전기기기류의 것
2.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 개발대상품목 또는 공업 기반기술 개발대상품목 중 개발을 위한 견본품

전기공업발전민간협의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협의회는 전기공업발전민간협의회라 한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산업정책심의 규정 제 9조의 3 및 동 운영세칙 제 3조 규정에 따라 전기공업분야의 민간협의회 조직 및 기능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업계의 애로 부문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연구 등 전기공업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2. 최근 기술 및 경영정보의 교환 및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 결과 등을 통한 관련사업의 최적 장단기 발전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견해의 교환.
3. 상공부장관이 의뢰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4. 필요한 분야 또는 품목별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5. 상공부장관에게 정기적(년1회 이상)으로 업계의 제품 수급별, 원자재 수급동향, 국제경쟁력, 관련 산업과의 관계 및 국제시장 동향 등에 관한 종합의견서 제출.
6. 기타 업계에 관련된 정책건의.

제4조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위원 18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전기공업분야의 업계, 학계 또는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한국전기공업협회 회장의 추천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되 중소기업은행부행장보, 산업연구원 중공업실장, 한국전기연구소 선임부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단장, 한국전력공사 품질관리처장, 한국전기공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6조 (부위원장)

1.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선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1인을 지명하되 한국전기공업협회 직원 1인을 간사보로 둘 수 있다.

제8조 (사무국 설치 및 기능)

1. 협의회는 한국전기공업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회의준비, 진행 등에 관한 사항과 조사, 연구업무를 총괄 조정하여 기타 협의회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 (회의)

1.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 기일 5일 전 까지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부터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의소집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록) 협의회 의사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1조 (배석 및 자료요청)

1.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시 필요한 인사를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업계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

1. 협의회는 그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분야의 분과위원회 및 실무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하 "분과위"라 한다.)

2. 분과위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한국전기공업협회 회장의 추천에 의해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3. 분과위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 (거마비)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거마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업계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예산) 회의비 및 거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무국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부에서 의뢰한 조사, 연구과제 수행경비와 참석위원 수당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15조 (해산)

1. 협의회는 목적달성 또는 불가능으로 존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해산은 협의회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본 회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협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회칙 개정에 의하여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991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電機工業